| 산업통상자원부<br>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 도 자 료** |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<br>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|
|---|---|---|

**2022년 7월 18일(월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17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22. 7. 15.(금) | 담당부서 | 투자유치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남명우 과장(044-203-4380) | 담 당 자 | 오유경 사무관(044-203-4081) |

#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대폭 강화

## - 『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』 개정 공고(7.18)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**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** 등을 위해 **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**을 거쳐 **『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』**을 **개정·공고**함(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2-512)

**< 현금지원제도 개요 >**

- **(목적)** 신성장동력기술, 첨단기술·제품, 소재·부품·장비, 연구개발센터, 고용창출,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
- **(법적근거)**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,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('07년 제정)
- **(지원한도)**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30%~50%
- **(절차)** 외투기업 신청 → 산업부(평가위원회→한도산정위원회) → 외투위원회 → 계약체결

□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**산업부**가 **대통령 업무보고**에서 밝힌 **'성장지향 산업전략'의 적극적 추진**을 위해,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**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**에 대한 **외국인투자 확대**를 위한 **현금지원을 대폭 강화**하는 것을 **주요 내용**으로 함

○ **(첨단기술 지원 강화)** 『조세특례제한법』상 지정된 **국가전략기술*에 해당**하는 **외국인투자**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**최대한도**를 **상향**해

**투자금액의 최대 50%**까지 **현금지원**하고, **국비 분담률**도 **20%p**까지 **상향**

*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, 반도체·이차전지·백신 분야 36개 기술

< 개정 前·後 비교표 >

| 구 분 | 개정 前 | 개정 後 |
|---|---|---|
| 분야별 최대한도 | ○ (R&D센터)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50%<br>○ (신성장·첨단·소부장) 40%<br>○ (지역본부, 대규모고용 등) 30% | ○ (R&D센터, 국가전략기술) 50%<br>○ (신성장·첨단·소부장) 40%<br>○ (지역본부, 대규모고용 등) 30% |
| 국 비 분담률 | ○ (수도권) 국비:지방비 30:70<br>○ (비수도권) 국비:지방비 60:40 | <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상향 가능><br>○ (수도권) 국비:지방비 50:50<br>○ (비수도권) 국비:지방비 80:20 |

○ **(공급망·탄소중립 지원 강화) 주요 공급망** 또는 **탄소중립**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 **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최대 10%p 추가 지원**

○ **(국내 산업 기여도 반영)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**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**한도 산정시 감액**할 수 있는 **근거 신설**

○ **(제도 운영 보완)** ①현금지원 대상에서 **우회투자*분**을 **배제**하고, ②현금지원 여부 평가시 **정량적 평가**를 **추가**해 **명확한 평가기준**을 **정립**하며, ③**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**를 **부과**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

* 국내 자본을 통해 해외에 기업(외국법인)을 설립하고, 다시 외국법인을 통해 국내에 재투자

□ **정종영 투자정책관**은 최근 **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, 중국 코로나 봉쇄** 등으로 **공급망 불안정**이 **지속**되는 상황에서,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하여 **양질의 외국인투자**를 **보다 많이 유치**하기 위해 **적극 노력할 계획**이라고 밝힘

※ 『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』 세부 개정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www.motie.go.kr) 예산·법령>고시·공고란에서 확인 가능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오유경 사무관(☎044-203-40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